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2013. 6. 2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수익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포함 신설(안 제18조의2)

나.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 감면율을 80퍼센트로 함 신설(안 제30조제3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다. 대부료 분할 납부 방법 개선(안 제33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비 고
50만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100만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시행령제32조제2항
100만원 초과 (6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 (6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 (9월 이내 4회 분납)	300만원 초과 (9월 이내 4회 분납)	

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 완화 신설(안 제38조)

- 1)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수익매각 요건
(현행) 1981년 4월 30일 이전 ⇒ (개정) 2003년 12월 31일 이전
- 2) 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수익매각 신설

마.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 납부와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 조정 (안 제33조 , 제36조, 제36조의2 , 제61조, 제61조의2)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사 용 료 대 부 료	· 연6%(영 제32조 2항 내지 제3항)	· 연3%(조례 신설)
매각대금	· 연3% ~ 연6%	· 연 2%~연3%(조례 개정)
변 상 금	· 연6%(영81조제1항)	· 연3%(조례 신설)
교환차금	· 연4%이상 6%이하(영 제11조의3)	· 연3% (조례 신설)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연6%(영 제82조)	· 연3%(조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4)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 7. 1. ~ 2014. 7.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인*



2014년 9월 23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54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따라그”를 “따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으로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사항중”을 “심의사항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천만원이하”를 “2천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660제곱미터이하”를 “660제곱미터 이하”로, “2천만원이하”를 “2천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990제곱미터이하”를 “990제곱미터 이하”로, “2천만원이하”를 “2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4조 중 “대한사항”을 “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회이상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를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실태조사시”를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로, “대장에기록하여야”를 “대장에 기록하여야”로, “대부시에는”을 “대부 시 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송등”을 “소송 등”으로, “재산(현황과약)”을 “재산(현황과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즉각시정하는등”을 “즉각 시정하는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매각대금을매각재산”을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은시장”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해서는공유임야관리”를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아니하고다른”을 “아니하고 다른”으로, “사업(도로.하천등)”을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총괄 재산관리관”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규칙”을 “때에는 규칙”으로 한다.

제12조 중 “규칙으로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부재산이행정목적”을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건을붙이지”를 “조건을 붙이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부채납한경우”를 “기부채납한 경우”로, “건물등”을 “건물 등”으로, “한 한다”를 “한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기산일은기부채납일”을 “기산일은 기부채납일”로 한다.

제16조 중 “하고환경”을 “하고 환경”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목적을신중히”를 “목적을 신중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익허가하여”를 “수익허가 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에지장”을 “사용에 지장”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 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19조 중 “· 수익허가부를비치”를 “· 수익허가부를 비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때에는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허가기간”을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으로, “납부방법등을”을 “납부방법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익을목적”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산에대”를 “재산에 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 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이용료를직접”을 “이용료를 직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의하여입찰 조건”을 “의하여 입찰조건”으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납부 준용)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중 “인정하지않는다”를 “인정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관리를태만히”를 “관리를 태만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사업에직접”을 “공익사업에 직접”으로, “취하여 야”를 “취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불가능하다고인정되”를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 기업 등”이라한다)”를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 기업 등”이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산업단지의전부”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및농공단지내”를 “및 농공단지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아파트형공장”으로”를 “지식산업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단지안”을 “산업단지 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규정하고있”을 “규정하고 있”으로, “50이상”을 “50 이상”으로, “채석을목적”을 “채석을 목적”으로, “지형변경”을 “지형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5이상”을 “25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같다.)이있”을 “같다)이 있”으로, “25이상”을 “25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각각 “10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창업지원”을 “창업 지원”으로, “지원관련개인”을 “지원관련 개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를 “인구집중 유

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50명이상”을 “50명 이상”으로,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를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또는사용허가”를 “또는 사용허가”로, “광석 · 토석등의 채광물채취료는”을 “광석 · 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으로,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만,시가적용”을 “다만, 시가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합또”를 “조합 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0이상”을 “50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평가액을합산”을 “평가액을 합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상으로결정한다”를 “대상으로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건폐율을역산”을 “건폐율을 역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산한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층건물”을 “2층 건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층이상”을 “3층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4층이상”을 “4층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층건물”을 “1층 건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상건물”을 “지상 건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하3층이”를 “지하3층 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상건물”을 “지상 건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하3층이”를 “지하3층 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자가전용”을 “자가 전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적용한다.대부”를 “적용한다. 대부”로,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을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불합리하 다”를 “불합리하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항에대”를 “사항에 대”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의”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중 “2천만달러이상인”을 “2천만달러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300명이상인”을 “300명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50퍼센트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조달비율이100퍼센트인”을 “조달비율

이 100퍼센트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시지역안”을 “시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를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를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00명이상 300명미”를 “200명 이상 300명 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50퍼센트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비율이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를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를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시지역안”을 “시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를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를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00명이상 200명미”를 “100명 이상 200명 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50퍼센트이상”을 각각 “50퍼센트 이상”으로,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를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를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시지역안”을 “시지역 안”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를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위하여필요”를 “위하여 필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되거나중도”를 “되거나 중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단”을 “단,”로, “귀책사유로인”을 “귀책사유로 인”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대부기간”을 “및 대부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에한한다)”를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최초년도에는 사용 개시일이전”을 “최초 년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2차년도부터는”을 “2차년도 부터는”으로, “30일이전”을 “30일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3퍼센트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를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로, “4퍼센트”를 “3퍼센트”로, “분할납부하게”를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로,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을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으로, “시행을위”를 “시행을 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400제곱미터이하”를 “4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지를국가보훈처장”을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으로, “6퍼센트”를 “3퍼센트”로, “10년이내”를 “10년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를 “매각대금을”로, “연6퍼센트”를 “연3퍼센트”로, “분할납부하게”를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장이인정”을 “시장이 인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로, “공장용지및”을 “공장용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를 “매각대금을”로, “3퍼센트”를 “2퍼센트”로, “붙여 분”을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매각대금을20년 이내의 기간으로”를 “매각대금을”로, “5퍼센트”를 “3퍼

센트”로, “분할납부하게”를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게”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은다음”을 “대상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내”를 “지식산업센터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치률”을 “유치률 위하여”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것이불가피”를 “것이 불가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이에위치하거나”를 “사이에 위치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시설부지상”을 “산업시설 부지상”으로, “생산시설소유자”를 “생산시설 소유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3,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를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2배이내”를 “2배 이내”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매각범위내”를 “매각범위 내”로, “· 건축법 ·”를 “건축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분이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39조 중 “종류는부동산관리신탁”을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으로 한다.

제40조 중 “수있도록”을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41조 중 “하되경제성”을 “하되 경제성”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신축시”를 “신축 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 다만”으로 한다.

제46조 중 “의하여건축위원회의”를 “의하여 건축위원회의”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청사”를 “범위안에서 청사”로 한다.

제48조 중 “제공하기위”를 “제공하기 위”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사항을준수”를 “다음사항을 준수”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과같이 해당”을 “다음과 같이 해당”으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사용료”를 “경우에는 사용료”로 한다.

제58조 중 “훼손하였거나예산”을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경우에는당해”를 “경우에는 당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의견서”를 “대한 의견서”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경우는 다음과같다”를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규칙”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3퍼센트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상률과최고액”을 “보상률과 최고액”으로 한다.

제63조 중 “때에는지체없이”를 “때에는 지체없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제33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6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관리책임) ① (생략)</p> <p>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u>따라그</u>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규칙</u>으로정한다.</p>	<p>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따라그</u> ----- ----- -----.</p> <p>③ ----- ----- ----- <u>규칙으로 정한다.</u></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업무) ①·② (생략)</p> <p>③ 제2항의 <u>심의사항중</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대장가액 <u>2천만원이하</u>의 재산 취득 · 처분</p> <p>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동지역 : <u>660제곱미터이하</u>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u>2</u></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심의사항 중</u>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2천만원 이하</u>----- -----</p> <p>4. ----- -----</p> <p>가.----- <u>660제곱미터 이하</u>----- <u>2천만</u></p>

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읍·면 지역 :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원 이하-----

나.----- 990제곱미터 이하----- 2천만원 이하-----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 대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① -----
-----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
----- 대장에 기록하여야 ----- 대부시에는 -----
-----.

1. (현행과 같음)

2. -----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3.·4. (생 략)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과약)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시정하는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 ·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

3.·4. (현행과 같음)

5. 소송 등 -----
-- 재산(현황 파악)

④ -----

----- 즉각 시정하는 등

-.

제9조(사용 ·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
----- 매각대금을 매각재산-----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

-----.

② -----

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
해서는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
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
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
니하고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규칙이 정하는 바에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
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
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
로정한다.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
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
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
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

-. -----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
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아니하
고 다른 -----
---- 사업(도로,하천 등)-----

-----총괄재산관리관
-----.

② -----

때에는 규칙-----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 규칙으로 정한
다.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

----- 기부재산이 행정
목적-----
-.

② -----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조건
을 붙이지 -----.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 · 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① -----
----- 기부채납
한 경우 -----
----- 건물
등 ----- 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간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무상사용기간) -----

----- 기산일은 기
부채납일 -----

-----.

제16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 및 처분) -----

----- 하고 환경 -----
-----.

제17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제17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

① -----
----- 목적을 신중히 -----

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생략)
-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

② -----

- 수익허가 하여-----.

- 1. (현행과 같음)
- 2. -----

----- 사용에 지장-----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익계약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익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19조(사용 · 수익허가부의 비
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
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부를 비
치하고 기록 · 보존하여야 하
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
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 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 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
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
· 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

제19조(사용 · 수익허가부의 비
치) -----
----- · 수익허가부를 비치-----

-----.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때
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
에 따라 사용 · 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 납부방법 등을 -----
-----.

② -----

----- 수익을 목적-----

-----.

③ -----

----- 재산에 대-----

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략)

<신설>

제22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 . -----

----- .

④ 법 제27조제4항-----

----- 이용료를 직접 -----

----- .

⑤ -----
----- 법 제27조제4항 ----- 의하여 입찰 조건-----

-----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납부 준용)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연고권 배제) -----

----- 인정하지 않는다-----

----- .

한다.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 매각 대상 등)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① -----

관리를 태만히 -----

-----.

② -----

----- 공
익사업에 직접 -----

취하여야 -----.

③ -----

-----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 매각 대상 등) -----
-----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

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 기업등” 이라한다)에 대부 ·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산업단지의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생략)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

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 기업 등” 이라한다)---

1. -----
----- 국가
산업단지의 전부 -----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일반산업단지-----
----- 및 농공단지 내-----
--
3.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식산업센터로-- -----

4. -----
----- 외국인 투자지역-----

5. -----
----- 산업단지
안-----
6. (현행과 같음)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 ·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생략)

③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2. (생략)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규정하고 있-----

 ----- 50 이상-----
 ----- 채석을 목적-----

 ----- 지형 변경-----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25 이상----- .

1. 2. (현행과 같음)

3. -----

 ----- 같다)이 있-----

 ----- 25 이상----- .

 ----- 10 이상-----
 ----- .

④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2. (생 략)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 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개인 · 단체 · 법인 ·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 · 인천 · 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④ -----

----- 10 이상-----.

1.·2. (현행과 같음)

3. -----

벤처기업- -----

4. ----- -창업 지원-----

지원관련 개인 -----

5. -----

----- 인구집중 유발시설 -----
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6. -----
----- 50명 이상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8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6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 · 토석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 · 토석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 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

제28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

또는 사용자-----
----- 광석 · 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

-- 50 이상-----.

② -----

-----.

-- 다만, 시가적용-----

-----.

③ (현행과 같음)

④ -----

조합 또-----

-----.

⑤ -----

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50 이상-----

 -----.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
 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을합산하여 결정한다.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평가액을 합산-----.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
 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
 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를 대상으로결정한다. 다만, 경
 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
 (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
 다.

② -----

 대상으로 결정한다. -----

 ----- 건폐율을 역산

 -----.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
 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
 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금액으로 한다.

③ -----

 합산한 금액-----.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
 우

1. ---- 2층 건물-----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

2. ---- 3층 이상 -----

는 경우

가. ~ 다. (생략)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 나. (생략)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 나. (생략)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4층 이상-----

3. ----- 1층 건물-----

4. 지상 건물-----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지하3층 이-----

5. 지상 건물-----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지하3층 이-----

④ -----

자가 전용-----

----- 적용한다. 대부

-----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사람과 공용 사용-----

⑤ -----
----- 불합리하다

----- 사항에 대-----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

1. -----

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
 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
 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신 설>

-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
 천만달러이상인 사업
-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
 명이상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서 국내부품 및 원 · 부자
 재 조달비율이100퍼센트인
 사업
- 마. (생 략)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

 ----- . <후단 삭제>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
 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
 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
 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
 인 사업

- 나.----- 2천
 만달러 이상인 --
- 다.----- 300명
 이상인 --
- 라.----- 50퍼센트 이
 상-----

 --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
- 마. (현행과 같음)
- 바.-----

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시지역 안-----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2. -----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가.-----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나.----- 200명 이상 300명 미-----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다.----- 50퍼센트 이상-----

--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라.-----
-----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

마.-----

-----시지역 안-----

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 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

바.-----
---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
-----.

가.----- 5 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

나.----- 100명 이상 200명 미-----

다.----- 50퍼센트 이상-----
-----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

라.-----
-----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

마.-----
----- 시지역 안-----

바.-----

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
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
한법률」에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생략)

② (생략)

<신설>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
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 · 수익허가, 대부하는 재
산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
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 4. (생략)

② (생략)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
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
· 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

---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에 의-----

사.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
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 -----

1. -----

----- 위하여 필요-----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되거나중도에 취소 ·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 ·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인한 중도 취소 · 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생략)

제32조(대부료등의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 · 수익허가 및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생산 · 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자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 · 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생략)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 개시일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되거나 중도-----
-----.

-- 단, -----

- 귀책사유로 인-----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등의 관한 특례) --

및 대부기간-----

-----.

1. (현행과 같음)

2. -----

-- 경우에 한한다)-----

3.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

----- 최초 년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 2차년도 부터는 -----
----- 30일 이전-----.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100만원 -----
--
- 2. 200만원 -----

- 3. 300만원 -----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제32조 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3퍼센트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략)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퍼센트-----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게 ----- .

1. · 2. (현행과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 시행을 위-----

4. -----

----- 400제곱미터 이하-----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

② -----

부지를 국가보훈처장-----

-- 3퍼센트 -----
-- 10년 이내-----
-----.

③ -----
----- 매각대금을-----

----- 연3퍼센트-----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
하게 -.

1. · 2. (현행과 같음)
3. -----

----- 시장
이 인정-----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

----- 공장용지 및

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시행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
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
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
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
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
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

----- 매각대금을-----
----- ----- 2
퍼센트----- 붙여 20년 이내
의 기간 동안 분-.

⑤ -----

----- 매각
대금을-----
----- 3퍼센트-
-----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게 -.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
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과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생략)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

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조성원가 매각) -----

 ----- 대상은
 다음-----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

 - 일반산업단지-----

2. -----

 - 지식산업센터 내-----
3. (현행과 같음)
4. ----- 유치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
 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 폐구거 · 폐제방으
 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
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
 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
 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
 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
 하, 읍 · 면지역에서는 3,00
 0제곱미터이하로서 1989년 1
 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
 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

위하여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것이 불가피-----
 -----.

1. 삭 제

2. -----

사이에 위치하거나 -----

3. ----- 산업시설
부지상----- 생산
시설 소유자-----

4. -----

 ----- 3,000제곱
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
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 종
 류는 부동산관리신탁 -----

 -----.

제40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공유임야관리) -----

 --- 수 있도록 -----.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 하여야 한다.

제41조(처분의 제한) -----

하되 경제성 -----

 -----.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 · 사업소 · 읍 · 면 · 동 청사 신축시 위치 · 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 신축 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① -----
 ----- 신축 시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

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 범위안
에서 청사-----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8조(정의) -----

제공하기 위-----
-----.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1조(사용책임) -----

다음사항을 준수-----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다
음과 같이 해당-----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1. ~ 3. (생략)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
 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
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
 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
 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
 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을 부과 · 징수하고자 할 경우
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
 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
 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
 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
 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
 지에 대한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
우는 다음과 같다.

제55조(사용료의 면제) -----

 ----- 경우
에는 사용료-----
 --.

- 1. ~ 3. (현행과 같음)

제58조(변상조치) -----

 ----- 훼손하였
거나 예산-----

 -----.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

 ----- 경우
에는 당해 -----

 -----.

② -----

 --- 대한 의견서-----.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 따라
 -----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
내 분납
-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
내 분납
-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
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 1. · 2. (생 략)
- ② ~ ④ (생 략)

제63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

각호와 같이 한다.

- 1. 100만원 -----
- 2. 200만원 -----

- 3. 300만원 -----

- 4. 400만원 -----

② -----

----- 경
우에는 규칙-----
-----.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3퍼센트로 한다.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 보상률과 최고액-----

-----.

- 1. · 2.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합필의 신청) -----

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당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 때에는 지체없이 -----

 -----.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 보호법」(법률제11048호, 2011.9.15)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나. 법제처 주관“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31조”로 변경하여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군산시장 누락된 사항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부터 안 제 7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 기타 ⇒ 그 밖에
 - 규정에 의한 ⇒ 따라
 - 하오 ⇒ 오후
 - 상오 ⇒ 오전
 - 출입구 ⇒ 해당 구역 출입구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31조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4. 7. 1 ~ 7. 21(21일), 의견접수없음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4년 9월 23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55호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을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행금지구역”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으로, “시장”을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을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로, “청취하여야”를 “청취하고 반영하여야”로 한다.

제5조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를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출입구”를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당”을 “시장은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p>
<p>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생략)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p> <p>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 다. (생략)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p>	<p>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p> <p>1. -----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밖에 ----- -----</p> <p>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 -----</p>
<p>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생략)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p>	<p>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p>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
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
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 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
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
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
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
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
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
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
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
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
시를 하 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
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
다)-----

-----.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공
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
-----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
행금지구역 등이 -----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
시)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을 나
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 ----

설치 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해당 -----

 -----.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 가. 시민들의 다양한 가족단위의 레저 활동 욕구 및 캠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에 조성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 나.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 나. 캠핑장 관리·운영의 위탁을 규정함 (안 제3조 ~ 제6조)
- 1)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 2)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캠핑장 예약을 규정함 (안 제7조)
- 1)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 라.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게시, 징수방법, 반환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 1) 성수기구분 : 성수기(5월~10월), 비수기(11월~4월) 평일 및 주말·공휴일
 - 2) 사용기준 : 당일사용, 1일(숙박)사용
 - 3) 사용요금(오토캠핑장 1박 기준)
 - 성수기- 25,000원, 비수기(주말)- 20,000원, 비수기(평일)- 15,000원
 - 4) 감면규정 : 전액, 30%감면, 20%감면
 - 5) 반환규정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숙박업-오토캠핑장)에 따라 반환
- 마. 시설의 사용제한을 규정함 (안 제12조)
- 바.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를 규정함 (안 제13조)

- 사.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아. 변상책임을 규정함 (안 제15조)
- 자. 보험가입을 규정함 (안 제16조)
- 차. 준용, 시행규칙을 규정함 (안 제17조 ~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4)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 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5) 「소비자기본법」

·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7. 29. ~ 2014. 8. 18.) 결과 - 검토의견서 첨부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군산시의회 의결을 얻은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4년 9월 23일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156호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737번지 일원에 위치한 오토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성수기”란 1년 중 5월에서 10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2.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 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단, 당일 이용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전날 (단, 당일 이용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캐러밴사이트, 물놀이장, 화장실 및 샤워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 4.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5면 이상을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장기체류자”란 14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 7 “관리자”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위탁운영자(법인·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고용한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캠핑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수익성을 위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

니 된다.

⑥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해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③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제6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 예약)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해야 하며, 시설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일 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를 입금해야 하며, 사용일까지 10일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4조4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의 사용료는 규칙에 의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직영 또는 위탁관리금 지원 위탁시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수도·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단체(사이트 5면 이상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사.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10조(시설 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2.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3. 기후변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3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해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6조(보험 가입) ① 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에서 보험 가입 후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산시 캠핑장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5~10월)	비수기		비 고
			주말, 공휴일	평일	
일반캠핑장 (1동/4인)	당일 (09:00~18:00)	10,000	7,000	5,000	전기·수도 사용료 별도
	1일	15,000	12,000	10,000	전기·수도 사용료 별도
오토캠핑장 (1동/4인)	당일 (09:00~18:00)	15,000	12,000	10,000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1일	25,000	20,000	15,000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캐러밴사이트 (1동/6인)	1일	30,000	25,000	20,000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전기·수도 사용료	1일	3,000			
주차장	소형	3,000 (1일 체류 5,000)			
	중형	5,000 (1일 체류 7,000)			
	대형	10,000 (1일 체류 15,000)			

※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2. 1면의 캠핑사이트에 4명(중학생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 3,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3. 1면의 캠핑사이트에 텐트 1동 추가시 10,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4.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가. 1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20% (당일 이용자는 당일 요금 기준)
 - 나.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40% (당일 이용자는 당일 요금 기준)
 - 다. 2시간 초과 4시간 까지 : 1일 사용료의 60% (당일 이용자는 당일 요금 기준)
 - 라.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당일 이용자는 당일 요금 기준)
5. 주차장 사용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일반캠핑장, 오토캠핑장, 캐러밴사이트 이용자는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한다.
 - 가. 소형 :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2톤미만 화물자동차
 - 나. 중형 : 13인승 이상 30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톤 이상 4톤 미만 화물자동차
 - 다. 대형 : 30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4톤 이상 화물자동차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시기	내용	반환기준		
			주말·공휴일	평일	
일반 캠핑장 · 오토 캠핑장 · 캐러밴 사이트	성수기	사용자의 책임 사유 로 취소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취소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손해배상
	비수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환급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환급			

※ 비고

- 1) 성수기는 1년 중 “5월에서 10월”을,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2)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단, 당일이용자는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단, 당일이용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를 말한다.
- 3)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별표 3]

군산시 캠핑장 이용객 수칙(제14조제2항 관련)

이 곳 군산시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이용객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장 및 퇴소

-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며, 다음 예약자를 위하여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캠핑장 이용객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시에는 강제 퇴장조치 됩니다.

2. 시설 사용료

-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소

- 시설 이용객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이용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2:00부터 07: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진출입시 통학로 주변 통과 시에는 규정 속도와 안전수칙을 준수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반려동물

- 모든 동물은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캠핑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캠핑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보 및 판매

-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가. 수도법 제16조 빗물관련조항 폐지에 따른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폐지 및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신설에 의거 「군산시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으로 폐지된 기존 「군산시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 규정된 상수도요금 감면사항을 본 규칙에 규정하고,

나. 「2014년 군산교육지원청 신규교육협력사업」 건의사항에 따른 공립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교 (특수학교 포함) 상수도사용료 감면사항을 새로 정하려는 것임

다. 기타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수도급수조례 제34조」와 「군산시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요금 감면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1)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수도요금 등에 부과되는 상수도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되는 상수도요금을 업종별로 20~65%감면

2) 폐지된 빗물이용시설설치 조례에 규정된 기존 감면사항을 규칙에 규정 (안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 기존 모범업소 및 맛집 상수도사용료 30% 감면사항을 '가'목으로 분류 (안 제37조 제1항 제4호 가목)

다. 관내 공립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의 상수도 사용료 20% 감면 지원 (일반회계 예산지원) 사항을 '나'목에 신설 (안 제37조 제1항 제4호 나목)

라. 용어정비 : 당해→그, 공지상→공터, 때→경우, 당해→해당, 한→한정, 전월→지난달, 대하여→대해서, 기장→기록, 과년도→지난해, 기간동안→기간에, 기타→그 밖에, 전일→전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 2) 「2014년 교육지원청 신규교육협력사업 건의사항 검토보고」 및 타시군 상수도급수조례 개정 현황

나. 예산조치

- 1) 빗물 이용시설 : 신청대상자 제한으로 예산소요 미미예상(비용 추계 생략)
- 2) 관내 공립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 인재양성과 일반회계 지원 (비용추계 : 별첨 참조)

다. 합 의 : 인재양성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14. 6. 16 ~ 2014. 7. 7) 결과 의견접수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4년 9월 23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69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공공시설등”을 “공공시설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등)”을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공사비등을”을 “공사비 등”으로, “당해”를 “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사비등”을 각각 “공사비 등”으로, “공사비등을”을 “공사비 등을”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불가피할때”를 “불가피할 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공지 상”을 “공터”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변경하는 때”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 한”을 “경우에 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제1호 중 “봉인상태”를 “봉인 상태”로 한다.

제21조제6항제1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전월”을 “지난달”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업종”을 “해당업종”으로 한다.

제25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기장한다”를 “장부 기록한다”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현년도 분”을 “올해 분”으로, “과년도”를 “지난해”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철거한 때”를 “철거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기간동안”을 “기간에”로 한다.

제36조제2항 전단 중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을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관련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란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등을 설치한 시설의 상수도요금 중 빗물사용량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 신청한 경우

1)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18호]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감면범위는 상수도의 업종에 따라서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업종구분	상수도 요금 감면범위
가정용	65% 범위내
일반용	40% 범위내
목욕용	30% 범위내
공업용	20% 범위내

나. 중수도 설치 운영자는 상수도 사용량 중에서 중수도 사용량의 20%를 공제하여 수도요금을 부과(단, 감면량은 상수도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 1)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17호서식]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계측장치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봉인은 시장이 한다.
- 3) 계측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치운영자가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수도요금을 감면받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폐업,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감면을 취소하고, 폐업, 가동중지 시점에서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
- 5) 중수도 사용량은 상수도 사용량 검침시 병행 검침한다. 검침 및 사용수량 적용 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대하여는 당해”를 “대해서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4)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좋은 식단재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및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를 말하며, 이 경우 상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 지원한다. 단, 감면대상 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관내 공립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로 상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 지원한다.

제37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전일”을 “전날”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제37조제1항관련)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수도 수전현황	수용가번호			
	구 경	mm	업 종	
빗물사용 현 황	시설위치		시설용량	
	사용용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년월일	

「군산시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군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p> <p>1. (생 략)</p> <p>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저소득 주민, 재해 및 재난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수용소, 긴급 공공시설등에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p>	<p>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공공시설 등----- ----- -----</p>
<p>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등) ① ~ ⑤ (생 략)</p> <p>⑥ 급수신청자가 공사비등을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수공사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 신청자에게 <u>당해</u> 급수공사의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u>공사비등의 변동등</u>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u>공사비등을</u>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u>공사비 등을</u> ----- ----- ----- ----- <u>그</u> ----- -----.</p> <p>----- <u>공사비 등</u> ----- ----- <u>공사비 등을</u> ----- ----- -----.</p>
<p>제6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설비는 기존공용 급수</p>	<p>제6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① ----- -----</p>

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설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제13조(수도계량기 설치위치) 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2. (생략)
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공터 상에 설치한다.

② (생략)

제14조(급수업종 변경)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은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급수업종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한다.

② ~ ④ (생략)

제15조(급수 수전번호) ① 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는 즉시 수도전신설대장에 등재하고 읍·면

 ---. -----

 ----- 불가피할 때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도계량기 설치위치) ① -----

 -----.

- 1.·2. (현행과 같음)
3. ----- 공터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급수업종 변경) ① -----

 -----.

 ----- 변경하는 경우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급수 수전번호) ① -----

침이 불가능한 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 사용 실적 또는 전 3개월 사용 실적 중 최고의 량으로 인정 조정이 가능하며 다만, 최고 량이 누수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정상으로 인정되는 전 3개월간의 평균 조정실적으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예시) ※ 부과방법
 ○ 계량기 고장, 불회전시 (전월 3개월 평균)(22 + 29 + 22) ÷ 3 = 24(세제곱미터 단위로 부과)
 ○ 계량기 교체시

가. (생략)

나. 철거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전월 3개월 평균(전례와 같음)

다. (생략)

⑦·⑧ (생략)

⑨ 계량기 미설치 급수량 조정은 가정용에 대하여는 1명당 월 5세제곱미터로 한다. 기타 업종으로서 조례 제31조제2항 별표 제8호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당해업종에 유사한 업태별 급수 시간과 조례 제31조제2항 별표

가. (현행과 같음)

나. -----
 -- 지난달 -----
 --

다. (현행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⑨ -----
 ----- 대해서 -----
 ----- . -----

해당업종 -----

제7호의 구경별 출수량을 적용하여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5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제31조(가산금) ① (생략)
②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주 체납액이 속하는 년도에 기장한다.
③·④ (생략)

제34조(수납소인) ① (생략)
② 수납부에 수납소인을 할 때에는 당해 납입필 통지서와 동일자로 수납소인을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현년도 분은 현년도 대장에 과년도 분은 이월액 정리부에 소인한다.

제35조(임시급수) ① 조례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

-----.

제25조(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

-. -----

-- 해당 -----

-----.

제31조(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장부 기록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수납소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
-----.

③ (현행과 같음)
④ 올해 분-----
지난해 -----

제35조(임시급수) ① -----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때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 기존급수설비를 일반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6조(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생략)

② 조례 제32조제2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 철거한 경우 -----

 -----.

② -----
 -----.

 ----- 기간에 -----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

 -----.

 -----.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감면

가.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적용

나. 중수도 설치 운영자는 상수도 사용량중에서 중수도 사용량의 20%를 공제하여

--.

1.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관련

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등을 설치한 시설의 상수도요금 중 빗물사용량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신청한 경우

- 1)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제18호]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이 경우 감면범위는 상수도의 업종에 따라서 다 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업종구분	상수도 요금 감면범위
가정용	65% 범위내
일반용	40% 범위내
목욕용	30% 범위내
공업용	20% 범위내

나. 중수도 설치 운영자는 상수도 사용량 중에서 중수도 사용량의 20%를 공제하여

수도요금을 부과(단, 감면량은 상수도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1)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17호 서식]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계측장치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봉인은 시장이 한다.(3) 계측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치운영자가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수도요금을 감면받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폐업,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감면을 취소하고, 폐업, 가동중지 시점에서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5) 중수도 사용량은 상수도 사용량 검침시 병행 검침한다. 검침 및 사용수량 적용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수도요금을 부과(단, 감면량은 상수도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1)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17호 서식]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측장치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봉인은 시장이 한다.

3) 계측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치운영자가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수도요금을 감면받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폐업,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감면을 취소하고, 폐업, 가동중지 시점에서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

5) 중수도 사용량은 상수도 사용량 검침시 병행 검침한다. 검침 및 사용수량

2.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누수
요금의 적용

가.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
실에 의하지 아니한 지하,
벽체내의 누수로 인하여 수
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
한 경우 누수발생 이전 3개
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에 대하여는 당해 업
종의 최초요금 단가를 적용
한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
할 수 있는 물탱크자동개폐
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
일러, 수도꼭지 등 누수부
분은 제외한다. 단, 감면적
용 기간은 직전2개월을 초
과할 수 없다.

나. 누수요금의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기타 관계서
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적용 등에 관하여는 군산
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
다.

2. -----

가. -----

----- 대해서는 해당 -----

나.-----

1) ~ 3) (생 략)

4) 기타 필요시 관계서류 등

3. (생 략)

4.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경우”란 좋은 식단체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및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를 말하며, 이 경우 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 또는 지원한다. 단, 감면 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생 략)

② 제1항제4호의 감면적용은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확보하는 일반회계 예산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3. (현행과 같음)

4.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좋은 식단체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및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를 말하며, 이 경우 상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 지원한다. 단, 감면대상 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관내 공립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로 상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 지원한다.

5.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 범위 안-----
-----.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

료 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2. (생 략)

제39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① (생 략)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 지역 주민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등기촉탁승낙서 및 기타 등 기 도는 권리취득에 필요한 서류

제40조(특수가압 시설의 운영) ① 특수가압 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 각 호-----

--.

1.·2. (현행과 같음)

제39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

----- 각 호-----

-.

1. ~ 6. (현행과 같음)

7. ----- 그 밖에 --

제40조(특수가압 시설의 운영) ①

----- 전날-----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제안이유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행규칙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 나. 당직근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 다. 근무자 및 수탁자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라. 시설사용을 위한 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마.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바. 소지품의 제한을 규정함 (안 제6조)
- 사. 홍보물의 게시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아. 시설물의 관리 및 보고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자. 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3. 참고내용

- 가. 관계법령 :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 7. 29. ~ 2014. 8. 1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4년 9월 23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70호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 캠핑장 내의 시설물 관리 보수 및 안내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자는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3조(근무자 및 수탁자의 임무) ① 근무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한 사항 관련 처리
4.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인근 주민과의 불편사항 등 처리
5.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
6. 산불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
7.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8.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4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캠핑장내 시설을 사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설사용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캠핑장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설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물 설치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소지품의 제한) 관리자는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 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관리 및 보고) ① 수탁자는 매월 캠핑장 이용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초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단, 직영시에 한함)

1. 시설사용 예약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3. 사용료 환불대장 (별지 제9호서식)
4. 시설이용 현황대장 (별지 제10호서식)
5. 근무일지 (별지 제11호서식)

제10조(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 내 ◇

1. 사용자는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캠핑장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집니다.
5. 캠핑장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6.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경우
 - 나.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다.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라.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규칙 제4조제2항 관련)

시 설 사 용 권

(앞쪽)

<p>제20 - 호 (원부)</p> <p>군산시 청암산오토캠핑장</p> <p> : (금 시설사용권)</p> <p>•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외 인 - 주 소 :</p> <p>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p> <p>20 년 월 일</p> <p>군 산 시 장 <input type="checkbox"/> 직인</p>	<p>제20 - 호 (사용자보관용)</p> <p>군산시 청암산오토캠핑장</p> <p> : (금 시설사용권)</p> <p>•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외 인 - 주 소 :</p> <p>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p> <p>20 년 월 일</p> <p>군 산 시 장 <input type="checkbox"/> 직인</p>
--	--

<p>사용자 준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캠핑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0. 기타 캠핑장 사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p>절 단 면</p>
---	----------------------

【별지 제5호 서식】 (규칙 제8조제1항 관련)

캠핑장 이용실적(월)

시설구분	이용실적					비고
	평 일		주 말		군산시민 (명)	
	Site(면)	인원(명)	Site(면)	인원(명)		
계						
오토캠핑장						
일반야영장						
캐러밴사이트						
기타①						
기타②						
기타③						

【별지 제6호 서식】 (규칙 제8조제2항 관련)

시설물 관리대장

관리 번호	점검일자	점 검 내 용	날씨	점 검 자
	년 월 일			(서명)

○관리내역

구분	시 설 물 명	점 검 상 태	조 치 사 항	비고

○기타

【별지 제7호 서식】 (규칙 제9조 관련)

시설사용 예약대장

결 재	담당자	계 장	과 장

20 년 월 일 날씨

예약 번호	예 약 자				사용 시설	사용 기간	사용료	감면 사항	시설물 사용료		비 고
	성 명 (단체장명)	예약일자	주 소	연락처					입금일	입금액	

【별지 제8호 서식】 (규칙 제9조 관련)

시설사용권 발급대장

결 재	담당자	계 장	과 장

20 년 월 일 날씨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신 청 인					사용 시설	사용 기간	사용 료	감면 사항	담당자 (인)	비고
		성 명 (단체장명)	생년월일	단체명	주소	연락처						

【별지 제9호 서식】 (규칙 제9조 관련)

시설사용료 환불대장

결 재	담당자	계 장	과 장

20 년 월 일 날씨

일련 번호	월일	신 청 인					사용 시설	납부내역		반환 금액	환급 사유	금융회사 (지급계좌)	수령인	비고
		성 명 (단체장명)	생년월일	단체명	주소	연락 처		납부 일자	납부 금액					

【별지 제11호 서식】 (규칙 제9조 관련)

캠핑장 근무일지

결 재	담당자	계 장	과 장

1. 근무자 및 근무일자

근 무 자			근무일자	날씨
직	성 명	서 명		
			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2. 이용인원 및 시설물 사용실적

이용인원		차량대수		시설사용(동)		비 고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3. 기타사항

※ 주요활동사항, 시설보수 및 관리사항, 주요인사방문, 각종사건 등